

군 보

영광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24-73 2024. 10. 17.(목)

발행 : 영광군 / 편집 : 기획예산실 홍보팀
(☎061-350-5742, FAX 061-350-5591)

공 고

영광군 공고 제2024-108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선동천)	2
영광군 공고 제2024-108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진덕천)	3
영광군 공고 제2024-1094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영광군 공고 제2024-1098호 영광군 우이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30
영광군 공고 제2024-1100호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43

소하천등 정비(소하천,소하천구역,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4-1085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영 광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대표자 (성명)		주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00-14
소하천명		선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879-14번지 외 3필지		
	면적	490㎡ (영구 470, 일시 2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기간	2024. 10. 17. ~ 영구 (일시 2024. 10. 17. 2025. 12. 31.)		
	목적 및 사유	몽강제 수원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따른 여·방수로 재설치 및 공사용 가설도로 개설을 위한 점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소하천등 정비(소하천,소하천구역,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4-1086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영 광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에스알29호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성명)	조용탁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381번길 27, 105동 1904호(신가동, 모아엘가 더수완)
소하천명		진덕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영광군 흥농읍 가곡리 688-1번지		
	면적	1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기간	2024. 10. 17. ~ 2029. 10. 17.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소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물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와 본 조례[별표]상 동일 규정 수수료를 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감 발급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 군민의 군정 제안을 통해 채택된 교육 관련 민원서류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비하여 다른 교육 관련 민원서류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증명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하게 규정한 수수료는 [별표1]내에서 삭제
-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 추가
-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에 대한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기존 200원에서 면제로 변경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재무과
전화) 061-350-5392 / FAX) 061-350-5593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세외수입담당자(전화: 061-350-5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 하

[붙임 1] 개정문

영광군조례 제2834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요율)” 을 “(종류 및 금액)”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요율표” 를 “제증명 등 수수료” 로 한다.

제7조제4호마목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증 명 >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통	600	<문구 추가>
- 일반용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인터넷)발급시 무료			
(2) 인감 변경 신고	1회	600	
2.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1통	800	
(2)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	700	
(3) 무적자 사실 확인원	〃	1,000	
(4) 부재 사실 확인원	〃	1,000	
(5) 재직(퇴직, 경력) 증명	〃	500	
3. 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	500	
(2) 중소기업자	〃	500	
(3) 광업, 공업, 상업	〃	500	
(4) 농가, 비농가	〃	600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	700	
(2) 생산실적	〃	600	
(3) 수출실적	〃	600	
(4) 납품실적	〃	600	
(5) 건물사용	〃	600	
(6) 공장원료 수요	〃	600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	
(8) 공장등록증명	〃	1,000	
(9) 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			
- 신규품목	〃	3,000	
- 기책정품목	〃	1,000	
(10) 시설보유 증명	〃	1,000	
(11)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800	
(12) 의료기관(휴폐업)사실증명	〃	1,200	
(13) 소유 사실 확인원	〃	600	
(14) 가축자가사육자 사실 확인	〃	8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	600	
(2) 공부의 등초본의 교부			
- 대장문서	〃	700	
- 토지도면	〃	700	
- 건물도면	〃	700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증명	1필지	800	
(2) 표준주택설계도면	〃	2,000	
(3) 환지예정지변경신청	〃	1,000	
(4) 체비지분할신청	〃	1,500	
(5)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1,100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삭제>
(1) 납세증명	1통	무료	〃
(2) 미과세증명	〃	800	〃
(3) 세목별과세증명	〃	800	〃
-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무료			〃
(4) <삭 제>			
8.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	1,0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	1,000	
(3) 원천징수공제증명	〃	1,0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	1통	1,000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1,000	
(6) 보상금지불증명	〃	1,000	
(7) 면세용도물품증명	〃	1,000	
9.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1,200	
(2)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1건	800	<삭제>
(3)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	800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0.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	300	
(2) 기타시설공무에 의해 발부하는 증명	〃	7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800	<삭제>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삭제>
11. 교육관련 민원서류			
(1) 학생			
- 성적증명(중·고등학교)		무료	
- 졸업증명(초·중·고등학교)		무료	
(2) 검정고시(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 검정고시 성적증명	1건	200	200→무료<변경>
-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	200	200→무료<변경>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삭제>
- 신규	1건	5,000	<삭제>
- 계속	〃	3,000	<삭제>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	〃	1,000	
(3) 폐지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	700	
2. 농수산물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700	
3 상공 및 동력지원 관례			
(1) 공장시설등록 허가 신청	1건	5,000	
(2) 공업입지 지정승인	〃	4,000	
(3) 전기보완담당자대행 승인	〃	2,000	
(4) 농산물경매사 임면승인신청	〃	3,000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20,000	<삭제>
(6)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	6,000	<삭제>
(7)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신규) 신고	〃	1,500	<삭제>
(8)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변경) 신고	〃	1,500	<삭제>
(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	1,500	<삭제>
(10)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1,500	<삭제>
(11)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	1,500	<삭제>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4,000	
(2) 공여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	3,000	
(3)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3,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4)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3,000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	2,500		
(6) 토지사용 승락서	〃	3,000		
(7) 체비지 확인서	〃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2,000		
(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2,0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	3,000		
5. 보건사회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삭제>
- 신규	〃	60,000		<삭제>
- 변경	〃	30,000		<삭제>
(2) 기타 유기장업 허가				
- 신규	〃	25,000		
- 변경	〃	15,000		
(3) 위생처리업 신고				
- 신규	〃	28,000		
- 변경	〃	26,500		
(4)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 신고	〃	28,000		
- 변경	〃	26,500		
(5) 장난감 제조업 신고				
- 신규	〃	10,000		
- 변경	〃	5,000		
(6) 세척제 제조업 신고				
- 신규	〃	13,000		
- 변경	〃	7,000		
(7) <삭 제>			2018.5.11. 개정	
(8) 허가증(신고증, 면허증) 재교부(신규)	1건	5,000		
(9) 시설묘지, 시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증 재교부	〃	2,000		
(10) 묘지개장허가 신청	〃	3,000		
(11) 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삭제>	
- 신 규	1건	40,000	<삭제>	
- 변 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	20,000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2) 안경업소 개설			<삭제>
- 등 록	1건	10,000	<삭제>
- 양도·양수 신고	"	10,000	<삭제>
(13) 치과기공소 개설			<삭제>
- 등 록	1건	10,000	<삭제>
- 양도·양수 신고	"	10,000	<삭제>
(14) 부설의료기관 개설			
- 신규	1건	20,000	
- 변경	〃	10,000	
(15) 안마시술소 개설			
- 신규	〃	20,000	
- 변경	〃	10,000	
6. 문화공보 관계			<삭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삭제>
- 신 규	1건	20,000	<삭제>
- 변 경	"	5,000	<삭제>
(2)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 신청			<삭제>
- 신 규	1건	20,000	<삭제>
- 변 경	"	5,000	<삭제>
(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삭제>
- 신 규	1건	20,000	<삭제>
- 변 경	"	5,000	<삭제>
(4) 체육시설업			<삭제>
- 신 고	1건	30,000	<삭제>
- 변 경	"	10,000	<삭제>
(5)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 신청			<삭제>
- 신 규	1건	20,000	<삭제>
- 변 경	"	5,000	<삭제>
(6)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등록 신청			<삭제>
- 신 규	1건	20,000	<삭제>
- 변 경	"	5,000	<삭제>
(7)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삭제>
- 신 규	1건	20,000	<삭제>
- 변 경	"	5,000	<삭제>
(8) 공연장 등록 신청			<삭제>
- 신 규	1건	10,000	<삭제>
- 변 경	"	5,000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7. 부동산중개업 관계			<삭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삭제>
- 개 인		20,000	<삭제>
- 법 인		30,000	<삭제>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	800	<삭제>
(3) 중개업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	10,000	<삭제>
8. 수산업법 관계(내수면어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내수면 관련 적용)			
(1) 어업면허	〃	7,500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	5,000	
(3) 어업권 이전, 변경분할	〃	3,000	
(4) 관리선의 지정사용 승인	〃	1,000	
(5) 월동장, 월하장의 지정	1건	5,000	
(6) 연안어업허가	〃	3,000	
(7) 삭제			2017.4.25. 삭제
(8) 구획어업 허가	〃	9,000	2014.12.30개정
(9) 시험연구, 교습어업 허가(승인)신청	〃	2,000	
(10) 시설물양식물 철거면제신고	〃	3,000	
(11)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	2,000	
(12) 어업권의 보상청구	〃	2,000	
(13) 입어분쟁, 분쟁의 조정, 재결신청	〃	2,000	
(14) 어업권원부 열람신청	〃	800	
(15) 어업권원부 등본 교부신청	〃	800	
(16) 어업권원부 초본 교부신청(어장도제외)	〃	800	
(17) 어장도의 교부신청	〃	1,500	
(18) 어업허가 유예신청	〃	1,600	
(19)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1,600	
(20) 어업허가(신청)사항 변경보고	〃	1,600	
(21) 어업신고		1,6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해수면 어업신고(「수산업법」 제47조제1항)	〃	1,600	
- 내수면 어업신고(「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	1,000	
(22) 삭제			2017.4.25.삭제
(23) 면허신청기간 연장 신청	〃	1,000	
(24) 어업면허증 재교부 신청	〃	1,000	
(25)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	1,000	
(26) 삭제			2017.4.25.삭제
(27) 수산동식물 체포금지 해제허가	〃	1,500	
(28) 어업권(지분) 이전등록	〃	1,500	
(29)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000	
(30) 어업 개시신고	〃	1,000	
(31) 삭제			2017.4.25.삭제
(32) 종묘 살포신고	〃	1,000	
9. 어선법관계(어선법 제13조의제1항 규정에 의 해 적용)			<삭제>
(1) 어선원부열람 신청	1건	800	<삭제>
(2) 어선원부등본 교부신청	1건	800	<삭제>
(3) 어선원부초본 교부신청	1건	800	<삭제>
10. 낚시관리 및 육성법 관계(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용)			<삭제>
(1) 낚시어선법 신고	1건	2,500	<삭제>
11. 농업관계			<삭제>
(1) 비료 생산업 등록	1건	30,000	<삭제>
(2) 비료 수입업 신고	1건	20,000	<삭제>
12. 농어촌형 승마시설 관련(「말산업육성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2014.5.1.신설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2014.5.1.신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단서 신설></p>	<p>제2조(적용) ----- ----- ----- ----- ----- .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u>요율</u>) (생략)</p>	<p>제3조(<u>종류 및 금액</u>) (현행과 같음)</p>
<p>제5조(징수방법) ①·② (생략)</p> <p>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정한 <u>요율표</u>에 의거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p>	<p>제5조(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제증명 등 수수료</u>----- ----- .</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 -----</p>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 3. (생략)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 라. (생략)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 아. (생략)

5.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바. ~ 아.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붙임 3] 현행 조례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2.11.22]

(일부개정) 2022.11.22 조례 제2834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50-53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3.12., 2022. 11. 2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서 정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한 사람마다 한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1., 2022. 11. 2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기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2022. 11. 2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2021. 5.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결정·등록된 사람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다.<개정 2019. 6. 28.>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4.21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5.13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25 조례 제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413호 : 1972.12.27)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7. 1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10.16 조례 제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3. 4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5.27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8. 5 조례 제081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5 조례 제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영광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징수조례」(조례631호) 「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63호)

부칙(1983.11.28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2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7 조례 제9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4.11.21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3.20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4.18 조례 제1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6. 8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7.15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7.16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12.31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2.15 조례 제11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9. 4.24 조례 제12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90.10.17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2.1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9. 6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16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13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6.27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6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15 조례 제16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칙(2001. 6.12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 9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14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2.11. 1 조례 제1769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생략
- ③(폐지조례) 생략
- ④(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6. 4.24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3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31 조례 제1952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2008.12.30 조례 제1992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2010.01.04 조례 제2022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칙(2011.01.18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02호 201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56호 2013.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93호 2014.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7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6호 2015.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22, 조례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2384호, 2017.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90호, 2018.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76호, 2019. 6. 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19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834호, 2022. 11. 22.>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으로 한다”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 2”를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표 1,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별표 1] <개정 2011.1.18, 2011.11.23, 2013.3.12, 2014.12.30., 2015.12.22., 2017.4.25. 2018.5.1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증 명 >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통	600	
(2) 인감 변경 신고	1회	600	
2.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1통	800	
(2)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	700	
(3) 무적자 사실 확인원	〃	1,000	
(4) 부채 사실 확인원	〃	1,000	
(5) 재직(퇴직, 경력) 증명	〃	500	
3. 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	500	
(2) 중소기업자	〃	500	
(3) 광업, 공업, 상업	〃	500	
(4) 농가, 비농가	〃	600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	700	
(2) 생산실적	〃	600	
(3) 수출실적	〃	600	
(4) 납품실적	〃	600	
(5) 건물사용	〃	600	
(6) 공장원료 수요	〃	600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	
(8) 공장등록증명	〃	1,000	
(9) 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			
- 신규품목	〃	3,000	
- 기책정품목	〃	1,000	
(10) 시설보유 증명	〃	1,000	
(11)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800	
(12) 의료기관(휴폐업)사실증명	〃	1,200	
(13) 소유 사실 확인원	〃	600	
(14) 가축자가사육자 사실 확인	〃	8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	600	
(2) 공부의 등초본의 교부			
- 대장문서	〃	700	
- 토지도면	〃	700	
- 건물도면	〃	700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증명	1필지	800	
(2) 표준주택설계도면	〃	2,000	
(3) 환지예정지변경신청	〃	1,000	
(4) 체비지분할신청	〃	1,500	
(5)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1,100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증명	1통	무료	2018.5.11. 개정
(2) 미과세증명	〃	800	
(3) 세목별과세증명	〃	800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2018.5.11. 개정
(4) <삭 제>			2018.5.11. 개정
8.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	1,0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	1,000	
(3) 원천징수공제증명	〃	1,0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	1통	1,000	<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1,000	
(6) 보상금지불증명	〃	1,000	
(7) 면세용도물품증명	〃	1,000	
9.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1,200	
(2)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1건	800	
(3)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	8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0.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	300	
(2) 기타시설공무에 의해 발부하는 증명	〃	7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8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도면첨부시, 500원
11. 교육관련 민원서류			
(1) 학생			
- 성적증명(중·고등학교)		무료	
- 졸업증명(초·중·고등학교)		무료	
(2) 검정고시(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 검정고시 성적증명	1건	200	
-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	2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 신규	1건	5,000	
- 계속	〃	3,000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	〃	1,000	
(3) 폐지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	700	
2. 농수산물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700	
3. 상공 및 동력지원 관례			
(1) 공장시설등록 허가 신청	1건	5,000	
(2) 공업입지 지정승인	〃	4,000	
(3) 전기보완담당자대행 승인	〃	2,000	
(4) 농산물경매사 임면승인신청	〃	3,000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20,000	2013.3.12개정
(6)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	6,000	2014.12.30신설
(7)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신규) 신고	〃	1,500	2014.12.30신설
(8)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변경) 신고	〃	1,500	2014.12.30신설
(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	1,500	2014.12.30신설
(10)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1,500	2014.12.30신설
(11)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	1,500	2014.12.30신설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4,000	
(2) 공여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	3,000	
(3)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3,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4)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3,000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	2,500	
(6) 토지사용 승락서	〃	3,000	
(7) 체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	2,000	
(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2,0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	3,000	
5. 보건사회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 신규	〃	60,000	2014.12.30개정
- 변경	〃	30,000	2014.12.30개정
(2) 기타 유기장업 허가			
- 신규	〃	25,000	
- 변경	〃	15,000	
(3) 위생처리업 신고			
- 신규	〃	28,000	
- 변경	〃	26,500	
(4)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 신고	〃	28,000	
- 변경	〃	26,500	
(5) 장난감 제조업 신고			
- 신규	〃	10,000	
- 변경	〃	5,000	
(6) 세척제 제조업 신고			
- 신규	〃	13,000	
- 변경	〃	7,000	
(7) <삭 제>			2018.5.11. 개정
(8) 허가증(신고증, 면허증) 재교부(신규)	1건	5,000	
(9) 시설묘지, 시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증 재교부	〃	2,000	
(10) 묘지개장허가 신청	〃	3,000	
(11) 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신 규	1건	40,000	
- 변 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	20,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2) 안경업소 개설			
- 등 록	1건	10,000	
- 양도·양수 신고	"	10,000	
(13) 치과기공소 개설			
- 등 록	1건	10,000	
- 양도·양수 신고	"	10,000	
(14) 부설의료기관 개설			
- 신규	1건	20,000	
- 변경	〃	10,000	
(15) 안마시술소 개설			
- 신규	〃	20,000	
- 변경	〃	10,000	
6. 문화공보 관계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 신 규	1건	20,000	
- 변 경	"	5,000	
(2)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 신청			
- 신 규	1건	20,000	
- 변 경	"	5,000	
(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 신 규	1건	20,000	
- 변 경	"	5,000	
(4) 체육시설업			
- 신 고	1건	30,000	
- 변 경	"	10,000	
(5)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 신청			
- 신 규	1건	20,000	
- 변 경	"	5,000	
(6)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등록 신청			
- 신 규	1건	20,000	
- 변 경	"	5,000	
(7)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신 규	1건	20,000	
- 변 경	"	5,000	
(8) 공연장 등록 신청			
- 신 규	1건	10,000	
- 변 경	"	5,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7. 부동산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ㄴ		
- 개 인		20,000	
- 법 인		3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ㄴ	800	
(3) 중개업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ㄴ	10,000	
8. 수산업법 관계(내수면어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내수면 관련 적용)			
(1) 어업면허	ㄴ	7,500	2014.12.30개정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ㄴ	5,000	2014.12.30개정
(3) 어업권 이전, 변경분할	ㄴ	3,000	
(4) 관리선의 지정사용 승인	ㄴ	1,000	2013.3.12개정
(5) 월동장, 월하장의 지정	1건	5,000	
(6) 연안어업허가	ㄴ	3,000	
(7) 삭제			2017.4.25. 삭제
(8) 구획어업 허가	ㄴ	9,000	2014.12.30개정
(9) 시험연구, 교습어업 허가(승인)신청	ㄴ	2,000	
(10) 시설물양식물 철거면제신고	ㄴ	3,000	
(11)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ㄴ	2,000	
(12) 어업권의 보상청구	ㄴ	2,000	
(13) 입어분쟁, 분쟁의 조정, 재결신청	ㄴ	2,000	
(14) 어업권원부 열람신청	ㄴ	800	
(15) 어업권원부 등본 교부신청	ㄴ	800	
(16) 어업권원부 초본 교부신청(어장도제외)	ㄴ	800	
(17) 어장도의 교부신청	ㄴ	1,500	
(18) 어업허가 유예신청	ㄴ	1,600	
(19)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ㄴ	1,600	
(20) 어업허가(신청)사항 변경보고	ㄴ	1,600	
(21) 어업신고		1,6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해수면 어업신고(「수산업법」 제47조제1항)	ㄴ	1,600	
- 내수면 어업신고(「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ㄴ	1,000	
(22) 삭제			2017.4.25.삭제
(23) 면허신청기간 연장 신청	ㄴ	1,000	
(24) 어업면허증 재교부 신청	ㄴ	1,000	
(25)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ㄴ	1,000	
(26) 삭제			2017.4.25.삭제
(27) 수산동식물 체포금지 해제허가	ㄴ	1,500	
(28) 어업권(지분) 이전등록	ㄴ	1,500	
(29)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ㄴ	1,000	
(30) 어업 개시신고	ㄴ	1,000	
(31) 삭제			2017.4.25.삭제
(32) 종묘 살포신고	ㄴ	1,000	
9. 어선법관계(어선법 제13조의제1항 규정에 의 해 적용)			
(1) 어선원부열람 신청	1건	800	
(2) 어선원부등본 교부신청	1건	800	
(3) 어선원부초본 교부신청	1건	800	
10. 낚시관리 및 육성법 관계(낚시관리 및 육 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용)			2014.12.30개정
(1) 낚시어선법 신고	1건	2,500	2014.12.30개정
11. 농업관계			
(1) 비료 생산업 등록	1건	30,000	2013.3.12.신설
(2) 비료 수입업 신고	1건	20,000	2013.3.12.신설
12. 농어촌형 승마시설 관련(「말산업육성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2014.5.1.신설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2014.5.1.신설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7.

영 광 군 수

1. 조례명: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영광청년육아나눔터 내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에 따른 운영 근거 마련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설치 및 위치, 기능(안 제3조 ~ 제4조)
- 운영계획의 수립, 이용대상자, 신청방법 등(안 제5조 ~ 제7조)
- 이용료 및 이용료감면,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8조 ~ 제9조)

- 이용의 제한, 이용료 반(안 제8조 ~ 제9조)
- 운영의 위탁, 지휘·감독(안 제12조 ~ 제13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4. 10. 17. ~ 11. 7.(21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가정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전화) 061-350-5547/ FAX) 061-350-5798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061-350-55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서 및 작성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명: 가정행복과 작성자: 여성가족팀 정영숙 							
4. 근거 법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아이돌봄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6. 규제존속 기한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시까지							
7. 신설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안 제7조)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요소 없을 것으로 판단
- 기술 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 가능성
 - 본 규제는 기술수준과 관계가 없으며, 도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해당 없음
-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 여부: 해당 없음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해당 없음
-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해당 없음

4. 규제 비용과 편익 비교분석

- 규제의 비용 분석: 별도 비용 소요되지 않음
- 규제의 편익 분석: 규제에 의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 없음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시장경쟁 제한 요소 포함 여부: 해당 없음
- 기업활동 저해 요소 포함 여부: 해당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규제기준과 절차의 객관성·명확성: 확보
-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 기한 타당성
 - 법적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아이돌봄법」 제4조
 - 존속 기한: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시까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해당 없음
- 기존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여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해당 없음
-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해당 없음

9. 기타 사항

- 타 지자체 사례
 - 순창군, 의령군, 논산시 등 관련 규정

의견제출서

1. 조 례 안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 하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긴급돌봄”이란 보호자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1회 2시간의 범위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일시돌봄”이란 보호자가 원하는 날에 1회 4시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이하 “돌봄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돌봄터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5길 16-2 영광청년육아나눔터 3층에 둔다.

제4조(기능) 돌봄터는 아이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긴급돌봄 또는 일시돌봄 제공
2.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터의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돌봄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돌봄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돌봄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자) 돌봄터의 이용 대상자는 보호자의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영광군에 주소를 둔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이로 한다. 단, 3세 미만이라도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소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등) ① 돌봄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이용 신청서를 돌봄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미리 돌봄터의 장과 유선 등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② 돌봄터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이용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① 돌봄터의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2.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돌봄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휴관일은 법정 공휴일로 한다.

1.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 30일 전까지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을 앓거나 의심 되는 경우
2. 고성,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돌봄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아이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돌봄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이용 신청서						
이용구분	<input type="checkbox"/> 긴급돌봄 <input type="checkbox"/> 일시돌봄					
아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성명: 관계:)				
이용시간	~ (시간)				이용료	원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허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					
응급처리절차	- 위급 상황 발생 시 위의 보호자에 연락합니다. -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호자가 정하신 의료기관()으로 응급수송할 것입니다.					
이용시간 준수	-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부모와 연결이 되지 않고 인계자가 오지 않는 경우 긴급 연락처에 기재된 사람에게 연락하여 인계함					
급·간식제공	- 간식 및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 원칙임					
<p>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의 응급처리 및 이용시간 준수 등에 동의하며 상기 아이에 대해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이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아이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보호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계:</p> <p>영 광 군 수 귀 하</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회원관리 및 홍보사항 안내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일로 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이용 아이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돌봄터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이용 대장

신청 번호	허가일	아 성 명	이 명 성	보호자 성 명	허 가 내 용			이용료	비고
					이용일시	이용 인원	사 유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영 광 군 수

1. 제 명

-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조례

2. 제정사유

-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향상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안 제5조) 업무 및 기능

- 청년의 창업, 교육, 복지에 관한 지원
- 영유아와 어린이의 돌봄,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안 제6조) 시설

- 청년센터, 동아리실, 다목적실, 스튜디오, 창작공작실, 교육실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놀이터 등

○(안 제7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4. 10. 17. ~ 11. 7.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인구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전화) 061-350-5258, FAX) 061-350-5622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 방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인구정책팀(☎ 350-52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향상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청년육아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청년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나눔터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5길 16-2에 둔다.

제5조(업무 및 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창업, 교육, 복지에 관한 지원
2. 영유아와 어린이의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3. 영유아 및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운영 및 교구 지원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6.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의 권익 향상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6조(시설) 나눔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센터, 동아리실
2. 다목적실, 스튜디오, 수제창작공작실, 창업교육실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4.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5.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6. 우리아이 긴급·일시 돌봄터 및 프로그램실
7. 영유아놀이터 및 어린이놀이터
8. 그 밖에 청년 지원 및 영유아·어린이 육아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한 경우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나눔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나눔터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나눔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눔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나눔터의 각 시설을 분리하여 위탁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나눔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나눔터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5. 수탁자는 나눔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7조제1항 관련)

시설명	운영시간		휴 관 일	
			공 통	요일별
영 광 군 청 년 센 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정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 광 군 공 동 육 아 나 눔 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영 광 군 우 리 아 이 긴 급·일시돌봄터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 광 군 장 난 감 도 서 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 일요일
영 광 군 다 함 께 돌 봄 센 터	학기 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 유 아 놀 이 터 어 린 이 놀 이 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	